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07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상당(전문위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상당(전문위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무	채용	채용	담당 예정 직무내용	근 무
분야	직급	인원		예정기관
전문위원	5급 상당	1명	 ○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보고 및 의사진행 보좌 ○ 자치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 전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2. 응시자격

- □ **공통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O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라기로 확정되 후 5년이 지나지 아니라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전문위원 (5급 상당)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 ※ 관련분야 학위: 행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포함 등 일반 행정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지방행정(의회·법제 등 실무경력), 지방자치 등
- ※ 경력인정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정부투자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보수 및 수당

O「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월~금)
- O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원서접수	1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심사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24. 12. 3.(화) ~ 12. 6.(금) (4일간)	24. 12. 11.(수)	24. 12. 17.(화)	24. 12. 19.(목)	25. 1. 1.(수)

- ※ 서류합격자 면접 심사 일시 및 장소는 합격자 개별통보 및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평정항목(5개 항목,「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가 없고,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2. 3.(화)~ 12. 6.(금)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성동구의회 사무국 의정팀(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 1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시 응시 수수료 현금 동봉(10,000원) * 통상환증서 불가

※ FAX, 이메일, 대리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인증(5급상당 10,000원)
 - 응시수수료를 미납한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 ※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이며, 해당 증명서 제출
 -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수수료 현금 동봉(10,000원)
-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사본가능)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재직 사실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시 경력 미인정
-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 7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8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9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 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 경력인정기간은 연,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O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번역본 (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O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O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O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 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응시자수 미달 시에도 해당),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O 면접시험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시험일정 변경 등에 따른 일정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성동구 의회사무국 의정팀《02-2286-6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